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호

안정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고시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94호(2011.09.09.)로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변경 승인·고시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29호(2013.07.16.)로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변경 승인·고시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의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(조선시설용지) 조성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,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일
국토교통부 장관

1. 산업단지의 명칭 : 안정국가산업단지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· 주소

- 주소 :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 이방대합로 1132
- 성명 : (주)가야중공업

3.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6번지 일원
- 면적 : 11,873㎡(육상 1,810㎡, 공유수면 10,063㎡)

4. 처분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내용 :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

나. 처분사유 :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, (주)가야중공업의 재무능력, 당초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따라 (주)가야중공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